

새일여성인턴안내

▶ 새일여성인턴제란?

-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**경력단절여성**이 **취업 후 직장에 적응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
-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체험하게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해소 및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계기 마련

▶ 인턴채용 지원금 지급 기준

대 상 사 업 장	○ 4대 보험가입 기업체 ○ 상시근로자 <u>5인이상~1,000인미만</u> 기업체 ※제외대상 사업장 ◦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업체 ◦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◦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 ◦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◦ 인턴지원 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직원의 인위적인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◦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 ◦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근 무 조 건	○ 주 35시간이상 전일제 근무원칙(4대 보험 가입, 근로계약체결) ○ 급여: <u>최저임금법 이상 약정지급</u>(주35시간근무시-1,760,460원이상) ※인턴채용 기업체에서 1일 7시간, 주5일 근무 시간 외 근로로 발생한 수당의 보전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채 용 기 간	○ 인턴 종료 후 계속 채용 가능 사업장
지 원 금	○ 총 380만원(기업체 320만원, 인턴자 60만원) -기업체: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- 인턴기간(3개월)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(휴일포함 10일미만 근무하고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하지 않음) -인턴자:인턴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후 근속장려금 지급

결혼이민여성인턴제

▶ 결혼이민여성인턴제란?

-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
- 기업으로 하여금 결혼이민여성을 직접체험하게 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계기 마련
-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제공

▶ 결혼이민여성인턴채용 장려금 지원 기준

대 상 사업장	○ 4대 보험가입 기업체 ○ 상시근로자 <u>5인이상~1,000인미만</u> 기업체 ※제외대상 사업장 ◦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업체 ◦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◦ 단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◦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 ◦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◦ 인턴지원 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직원의 인위적인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◦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(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 ◦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근 무 조 건	○ 주30시간이상 전일제 근무원칙(4대 보험 가입, 근로계약체결) ○ 급여: 최저임금법 이상 약정 지급(주30시간 근무시-1,510,340원이상) ※ 인턴채용 기업체에서 1일 6시간, 주5일 근무 시간 외 근로로 발생한 수당의 보전으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채용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채 용 기 간	○ 인턴과정 종료 후 계속 채용 가능 사업장
지원금	○ 총 380만원(기업체 320만원, 인턴자 60만원) -기업체: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채용지원금 지급 인턴기간(3개월)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(휴일포함 10일미만 근무하고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하지 않음) -인턴자:인턴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후 근속장려금 지급